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12월 일 (제285회)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권광택 의원 외 7인
발의연월일	2009년 10월 일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광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8
----------	-----

발의연월일: 2009. 10.

발 의 자: 이영복·송은섭·박영웅·
심홍섭·민경환·이언구·
이규완·권광택 (8인)

1. 제안이유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특별자금의 지원과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된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시행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안 제3조)
- 나. 기술력 우수기업의 지원자금 근거 마련(안 제5조)
- 다. 벤처기업과 기술력 우수기업의 창업과 성장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조항 신설(안 제9조)
- 라.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사업 근거 마련(안 제9조의3)
- 마.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규정(안 제9조의4)

3. 조례안 : 불 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예산조치 : 자체 세부계획수립시 재원확보
7.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8. 입법예고 : 2009.08.27 ~ 2009.09.15(특이의견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자“라”를 “”중소기업“이라”로, “중소기업자들”을 “중소기업을”로,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같은 조 제4호 중 “제7조제1항”을 “제10조”로,

같은 조 제6호 중 “제28조의2의제1항”을 “제28조의2제1항”으로, “설립승인.”을 “설립승인,”으로

같은 조 제7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로,

같은 조 제9호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로, “동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도조례”를 “충청북도 조례”로,

같은 조 제10호 중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중 “기금의 설치”를 “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입·세출외로”를 “세입·세출예산 외로”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용자금”으로 각각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차입금 및 용자상환금”을 “차입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자금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 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제5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제5항으로 각각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5항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 및 출연”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용자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출연 또는 용자 받을 수 있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출연 또는 용자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개체소요자금”을 “대체소요자금”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을 “사업을”로 각각 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9조제7항의 항 번호를 제9항으로 하고,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 부터 제7항”으로 한다.

제9조제8항의 항 번호를 제10항으로 하고, 본문 중 “제1항 내지 제7항”을 “제1항 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기금 중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9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도지사는 제1항, 제6항, 제7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등에게 필요한 경우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①도지사는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융자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자금지원 기업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와 대응투자자로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특별자금지원) ①도지사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자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의 지역과 업종
2. 지원조건
3. 그 밖의 특별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장”을 “중소기업중앙회 충북 지역본부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도의회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인”을 “충청북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명”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팀장”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각각 한다.

제13조제5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를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도의회 및 중소기업청장에게”를 “충청북도의회에”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출납을”을 “관리를”로, “사업담당국·본부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사업담당과·팀장”을 “사업담당과장”으로 각각 한다.

제19조제2항 중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0호와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142조 -----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이라 함은 <u>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u>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생략)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이라 ----- ----- 중소기업을 -----. 2. ----- ----- 「<u>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u>」 ----- ----- -----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p>	<p>4. ----- ----- ----- ----- 제10조----- -----.</p>
<p>5. (생략)</p> <p>6. “아파트형공장 건설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 건축허가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6. ----- ----- -----제28조의2제1항----- -----설립승인,----- -----.</p>
<p>7.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p>	<p>7.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p>
<p>8. (생략)</p>	<p>8. (현행과 같음)</p>
<p>9.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동 시행령 제63조 및 도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p>	<p>9.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 한다) ----- ----- ----- 같은 법 시행령-----충청북도 조례-----.</p>

현 행	개 정 안
<p>10.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 기술개발·사업전환 협동화·물류현대화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p> <p>11. ~ 12. (생략)</p> <p><신설></p> <p>제3조(기금의 설치) ①(생략)</p> <p>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다.</p> <p><신설></p>	<p>1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p> <p>11. ~ 12. (현행과 같음)</p> <p>13.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p> <p>제3조(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세입·세출에 산 외로-----.</p> <p>③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조성) ①(생 략)</p> <p>1. ~ 2. (생 략)</p> <p>3. <u>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u> <u>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u> <u>및 산업기반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u></p> <p>4.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u>융자상환금</u></p> <p>②(생 략)</p>	<p>제4조(기금의 조성) ①(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u> <u>률</u>」 제63조----- <u>중소기</u> <u>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u> <u>융자금</u></p> <p>4. -----, 차입금</p> <p>②(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p> <p>① ~ ②(생 략)</p> <p>1. ~ 6. (생 략)</p> <p><신 설></p> <p>③<u>도지사는 중소기업청장과 사전</u> <u>협의하여 제2항 각호의 자금을</u> <u>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u></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p> <p>① ~ ②(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기</u> <u>업 지원자금</u></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④기금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기금 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생략) ⑥(생략)</p>	<p>④(현행 제5항과 같음) ⑤(현행 제6항과 같음)</p>
<p>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생략)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③(생략)</p>	<p>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현행과 같음) ②_____ 제5조 제2항_____ _____ ③(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 금의 예수 및 출연)</p> <p>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예 수금 또는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 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 받을 수 있다.</p> <p>②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으로부터 예탁받을 때의 절차 및 조 건에 관해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 계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p>	<p>제8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의 출연금 및 융자금)</p> <p>①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출연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다.</p> <p>②기금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으로부터 출연 또는 융자받을 때의 절 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공공자금관 리기금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p>
<p>제9조(기금의 사용등) ①(생 략)</p> <p>1. ~ 2.(생 략)</p> <p>3. 기계기구등 생산(서비스)시설 의 신규구매 및 개체소요자금</p> <p>② ~ ③(생 략)</p> <p>④기금중 소상공인 육성 지원자 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제9조(기금의 사용등) ①(현행과 같음)</p> <p>1. ~ 2.(현행과 같음)</p> <p>3. ----- ----- 대체소요자금</p> <p>② ~ ③(현행과 같음)</p> <p>④----- -----사업을 ----- -----.</p> <p>1. ~ 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⑤(생 략) 1. ~ 3.(생 략) 4. 기타 <u>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u>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⑥(생 략) <u><신 설></u></p> <p><u><신 설></u></p>	<p>⑤(현행과 같음) 1. ~ 3.(현행과 같음) 4. --- <u>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u>----- ----- -----</p> <p>⑥(현행과 같음)</p> <p><u>⑦기금 중 벤처기업 등 기술력 우수 기업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u></p> <p>1.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u>」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u>벤처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의 창업과 성장 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u></p> <p>2. <u>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u></p> <p><u>⑧도지사는 제1항, 제6항, 제7항의 사 업을 지원하는 경우 충청북도중소기 업대상 수상기업 등에게 필요한 경우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⑦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6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보조금, 이자 차액보전 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p> <p>⑧제1항 내지 제7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 설></p>	<p>⑨----- 제1항 부터 제7항 -----</p> <p>⑩제1항 부터 제9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의3(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p> <p>①도지사는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융자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자금지원 기업에 대한</p>

현 행	개 정 안
<p>1. ~ 2.(생 략)</p> <p>3. <u>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회장</u></p> <p>4. <u>도의회산업경제위원회 위원 1인</u></p> <p>5. <u>상공회의소 사무국장</u></p> <p>6. (생 략)</p> <p>7. <u>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팀장</u></p> <p>8. (생 략)</p> <p>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u>1년</u>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⑥ ~ ⑦(생 략)</p>	<p>1. ~ 2.(현행과 같음)</p> <p>3. <u>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u></p> <p>4. <u>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1명</u></p> <p>5. <u>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u></p> <p>6. (현행과 같음)</p> <p>7. <u>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u></p> <p>8. (현행과 같음)</p> <p>⑤-----<u>2년</u>----- -----.</p> <p>⑥ ~ ⑦(현행과 같음)</p>
<p>제15조(사후관리) ①<u>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u></p> <p>②(생 략)</p>	<p>제15조(사후관리) ①----- ----- ----- <u>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②(현행과 같음)</p>
<p>제17조(결산 및 보고) ①(생 략)</p> <p>②<u>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 및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17조(결산 및 보고) ①(현행과 같음)</p> <p>②----- ----- -----<u>충청북도의회에</u>----- -----.</p>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전문기관의 협조) ①(생략) ②도지사는 이 경우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8조(전문기관의 협조) ① <u>현행과 같음</u> ② <u>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사업담당 국·본부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사업 담당과·팀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관리를-----경제통상 국장-----, 사업담당 과장----- -----. ②----- ----- 「<u>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u>」 -----.</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육성계획의 수립)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관할구역내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6, 2008.2.29>

②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설립을 통한 지역별, 업종별 중소기업의 집산화 및 원활한 사업장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과 경영안정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7.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2조 (육성계획의 조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도의 계획간에 중복 또는 상충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11.8, 2008.2.29>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43조 (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
-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유예

제49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지원)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등의 제공
- 2.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

- 3.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타의 운영
- 6.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③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6.2.9>

□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10조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2005.12.23, 2008.2.29, 2008.3.21>

5. "체인사업"이라 함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2. "중소기업의 자동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정보화"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나.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5.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 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삭제 <2007.12.27>
 - 라. 삭제 <2007.12.27>
 -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바. 삭제 <2007.12.27>
 - 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협업"이란 여러 개의 기업이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가업승계"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개정 2008.12.19>)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2.19>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개정 2007.8.3>)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③ 삭제 <2006.3.3>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

역으로 집단화·협업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⑦ "전략적 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8.3>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